

○국민건강보험세란?

1. 국민건강보험세의 구조

각 시정촌에 있어서 그 연도에 예측된 의료비로부터 국가 등의 보조금과 병원 등에 지불한 일부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 국민건강보험세의 총액입니다. 이것을 다음의 3 개 항목에 할당하여 그것들을 조합하여 한 세대 당 국민건강보험세액이 결정됩니다.

소득할	세대 소득에 따라 산정
균등할	세대 가입자에 따라 산정
평균할	한 세대 당 금액으로 산정

※ 조합은 시정촌에 따라 다릅니다.

※ 40 세부터 65 세까지는 개호보험료도 함께 납부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세 납부 시의 주의 사항

- 국민건강보험세는 연도별로 계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세를 납부하는 것은 각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세대주가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도, 가족 중에 국보 가입자가 있으면 그 가입자의 보험세는 세대주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국보 가입 신청이 지연됐을 경우에도 가입 자격이 발생한 월까지 거슬러 올라가 국민건강보험세를 납부합니다.
- 연도의 도중에 국보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월분부터 국민건강보험세를 납부합니다.
- 연도의 도중에 국보를 탈퇴했을 경우, 탈퇴한 월의 전월분까지의 국민건강보험세를 납부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세의 납부 방법

납부 방법으로는 납세 통지서 또는 계좌 이체를 통한 징수(보통 징수)와 연금으로부터의 징수(특별 징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 징수에 관해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 ① 연금 급부액이 연간 18 만엔 이상인 사람
- ②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이 65 세 이상인 국보 세대에 있어서, 세대주가 국보의 피보험자이며,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
- ③ 개호보험료의 특별 징수 대상자
- ④ 개호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세를 합산한 금액이 연간 급부액의 1/2 상당 금액 이하인 사람

☆국민건강보험세 납부는 미납을 방지할 수 있는 '계좌이체'가 편리합니다. 신청은 시정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4. 국민건강보험세를 체납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국민건강보험세를 체납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세는 납기 안에 반드시 납부합니다.

- (1) 납부 기한을 넘기면 독촉을 합니다
- (2) 1 년 이상 체납한 상태로 의료 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의료비 지불 시에 일단 전액(100%)을 부담하고, 이후에 가입되어 있는 국보 담당 창구에 신청하여 보험 급부분을 환급받게 됩니다. 또한, 개호보험의 제 2 호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호보험의 급부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3) 1 년 6 개월을 체납하면 보험 급부 전액 또는 일부가 정지됩니다.
- (4) 이후에도 체납이 계속되면 정지된 급부액에서 체납분이 공제됩니다.
※ 재산을 차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일본어를 잘 모르겠을 경우

시약소 또는 행정기관의 창구에서는 외국어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위해 방문할 때는 가능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동반해 주세요.

